

더욱 촘촘해진



“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제대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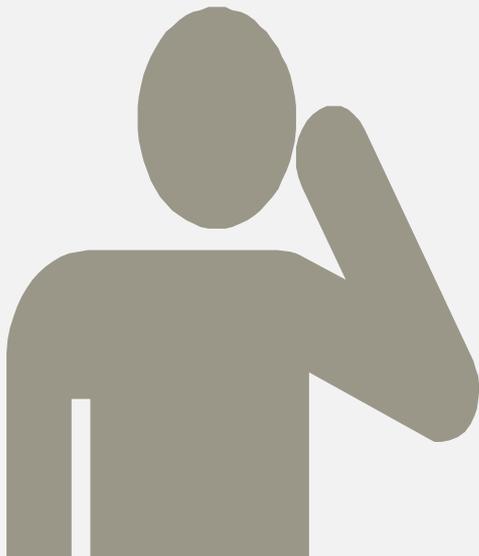
---

# 목 차

- I. 부패 ·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 II. 신고 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
- III.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 IV.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1. 부패·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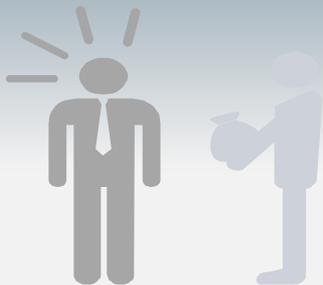


# 부패신고란 무엇일까요?

## 부패행위의 개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4호)

### 1 (가목)

- ❖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 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는 행위



### 2 (나목)

- ❖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3 (다목)

- ❖ 1,2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 단서 제공(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

☞ 공익침해행위 : 284개 법률에서 정하는 벌칙 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국민의  
건강



AIDS 감염된  
혈액 유통

국민의  
안전



폭발위험  
냉매가스 판매

환경



폐기물  
불법 매립

소비자  
이익



가짜참기름  
유통

공정한  
경쟁



LPG  
가격 담합

기타 공공의  
이익



거짓  
채용광고

#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 1. 건강분야(56개)



### 의료법, 약사법

-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의료광고,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면허사항 외 의료행위



### 식품위생법

- 위해식품의 제조 및 판매, 식품유통기한 변조, 및 식품 인증마크 불법사용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허위표시



### 학교급식법

-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를 사용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2. 안전분야(79개)



### 고압가스안전 관리법

- 폭발위험이 있는  
가짜 자동차에어컨  
냉매가스를 무허가로  
수입·납품하는 행위



### 건설기술관리법

- 불성실한 책임감리  
등으로 시설물의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는 행위



### 건축사법

-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시공감리를  
하는 행위



### 해사안전법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3. 환경분야(61개)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 행위



### 대기환경보전법

- 유독물을 사용하는 인쇄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 악취방지법

- 악취관리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유해물질, 농약, 축산폐수 등을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4. 소비자이익 분야(69개)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유통하는 행위



### 개인정보 보호법

-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 소비자기본법

- 물품·용역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이자율을 초과한이자 수수,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

#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5. 공정경쟁 분야(15개)



###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 가격 담합 등 부당 공동행위, 가격 차별 등 불공정거래행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법 하도급 거래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공사를 따내기 위해 미군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6대 분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6.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4개)



### 채용절차법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 방위사업법

-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하는 행위



## II. 부패·공익신고 방법 및 접수처리 절차



#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기관

##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 누구든지

(내·외국인 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

## 신고방법

### 신고내용

- ✓ 인적사항
- ✓ 기명의 문서로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
-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 증거 제시

### 신고방법

- ✓ 방문·우편
- ✓ 팩스 044-200-7972
- ✓ 청렴포털 [www.clean.go.kr](http://www.clean.go.kr)
- ✓ 전화(1398) 상담만 가능

일반  
국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수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기관

## 신고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6조

## 누구든지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 신고방법

### 신고내용

- ✓ 인적사항
- ✓ 기명의 문서로 신고취지 및 이유 기재
- ✓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첨부

### 신고 방법

- ✓ 방문·우편
- ✓ 팩스 044-200-7972
- ✓ 청렴포털 [www.clean.go.kr](http://www.clean.go.kr)
- ✓ 전화(1398) 상담만 가능

### 비실명 대리신고

- ✓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음

## 누구든지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행정감독기관

공사등 공공단체

국회의원

기업의대표자·사용자

# 1. 조사기관 자체 접수 공익신고 사건 접수·처리 절차

<p>접수 (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고서 기재사항, 증거 및 신고내용 등 확인</li> <li>② 공익신고 접수</li> <li>③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li> <li>④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li> </ul>		
<p>확인 (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284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li> <li>②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li> </ul>		
<p>처리 (조사기관)</p>	<p>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직접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li> <li>② 신고자에게 결과통보</li> </ul>	<p>관할이 아닌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li> <li>②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li> </ul>	<p>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li> <li>② 신고자에게 조사 불개시 사실 등 통보</li> </ul>

## 2. 권익위 이첩 · 송부 공익신고 사건 접수 · 처리 절차

<p>처 리 (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li><li>②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li><li>③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결과 통보</li></ul>	<p>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권익위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 등에 이첩</p>
<p>후속조치요구 (권익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제품회수 등)</li><li>② 재조사 요구(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li></ul>	
<p>조 치 (조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의견제시, 재조사 요구에 따른 조치</li><li>② 권익위에 결과 통보</li></ul>	

### 3. 공익신고 처리시 유의사항

#### 비밀보장 준수

- ✓ 공익신고, 피신고자 등의 인적사항 임의 노출 · 공개 · 보도 금지
- (신분공개 부동의 사건을 조사기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 !!
-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 주의 요망 !!

#### 보호 · 보상 제도 안내

- ✓ 공익신고자에게 보호 · 보상 제도 안내
  -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공익신고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 · 보상제도 안내문> 반드시 제공
- ☞ 공익신고 보호 · 보상제도 안내 의무규정 신설(17.10월 시행)

# (참고1)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범위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비밀보장	성명, 주민등록 번호, 영상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자·협조자 인적사항</li> <li>■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li> <li>■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li> </ul>
		<p>☞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p>
불이익 조치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파면·해임·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조치</li> <li>☞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li> <li>■ 부당한 인사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li> <li>■ 임금 등의 차별지급, 근무 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li> <li>■ 명단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 행위</li> <li>■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결과 공개 금지</li> <li>☞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li> </ul>

# (참고1) 개인정보 보호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신고자 보호범위

구분	개인정보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신고자 보호조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이익 조치 발생시 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상회복 조치</li> <li>-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 지급</li> <li>-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등</li> </ul> </li> <li>☞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li> </ul>
신고자 책임감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 발견시 형,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 감면</li> <li>■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li> <li>■ 공익신고 금지·제한하는 단체협약·고용계약·공급계약 무효</li> <li>■ 손해배상 청구 금지,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li> </ul>
신변보호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동거인은 권익위에 신변보호 조치 요구 가능</li> </ul>
신고방해·취소강요 금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 취소 강요 금지</li> <li>☞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li> </ul>



## 비실명 대리신고

- ▶ 음란정보 유통, 성매매 알선 등을 비실명 대리신고(버닝썬 사건)  
혐의사실 수사중, 확인건 기소 → (수사 또는 재판 진행중)
- ▶ 구조된 동물들을 정당한 사유없이 안락사시켰다고 비실명 대리신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확인 → (기소의견 송치)

## 의약품 리베이트

- ▶ OO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 사실  
공익신고  
리베이트 지급 사실 확인 → (의사포함 총 300여명 형사입건)

## 미인증제품 제조·판매

-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안전난간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공익신고  
미인증 안전난간 현장설치 확인 → (수거파기 명령, 기소)



## 폐기물 불법매립

- ▶ 폐 콘크리트를 승인 없이 공장주변에 매립한 사실 공익신고

폐콘크리트 불법 매립 사실 확인 → (고발조치 및 벌금 부과)

## 허위·과장 광고

- ▶ 인체에 무해한 재료를 사용한 PVC 매트라고 광고하였으나 기준 초과 환경 호르몬 검출의혹 공익신고

환경호르몬 검출 사실 확인 → (자진 리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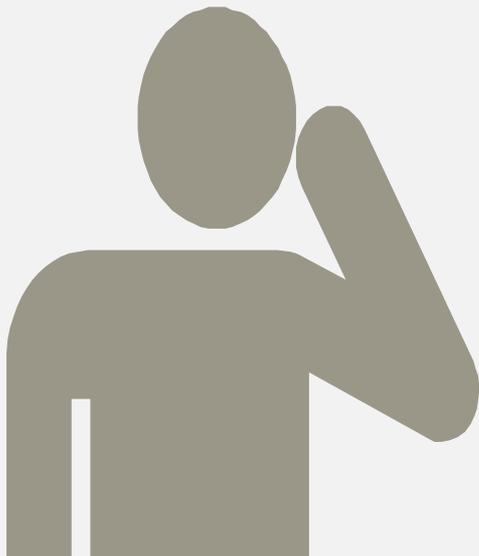
## 가격담합

- ▶ 자사 대리점에 대해 판매가격 및 영업구역 지정 등 불공정 거래 행위 공익신고

대리점 가격담합 지시 사실 등 확인 → (과징금 부과)



### III.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금지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금지

❖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신변  
보호  
요청



신변  
보호  
방법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 **형·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 공익신고자등의 범죄·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형벌·징계·행정처분 하는 경우 징계권자,처분권자는 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 **직 무 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손해배상의 청구 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 행정적 ·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보호조치를 통해 공익신고자를 지켜 드립니다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요구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 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접수·처리  
과정에서  
부주의

- ▶ A공무원은 OO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익신고 접수 후 해당 어린이집을 조사하던 중 **업무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노출
- ▶ B공무원은 모래가 섞인 시멘트 사용 사실을 신고한 하청업체를 조사하던 중 **업체의 전화기로 내부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신고자 전화번호를 노출함
- ▶ C교육청은 예산부적정 사용 관련 소청심사청구 답변서 작성을 위해 조사보고서를 보내달라는 학교의 요청에 **신고자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이는 그대로 피신고자들에게 송달됨

**주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유출에 주의하라는 안내만으로는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움(판례)

신고성 민원

- ▶ D기관은 OO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 접수 후 해당업체에 전화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합의를 권고**하였고, 민원인은 해당업체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피해를 받음



## 언론보도

- ▶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실명을 최초로 보도하고 신고자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장면을 방송에 노출시킨 기자와 언론사 고발 (알 권리 충족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보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 후속·인용 보도한 언론도 비밀보장의무 위반

**주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의 범행은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함으로써 성립, ...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진 상태라도 범행의 성립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판례)

## 보도자료 배포

- ▶ 수사기관에서 사무장 병원 부당 진료비 청구 관련 신고 사건의 수사 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OO한방병원 전 원무부장의 첩보로 병원관계자 검거'라는 신고자가 유추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남



피신고기관에  
신고자 정보  
제공

- ▶ E공무원은 OO진흥원 담당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면서 OO진흥원에 이송하지 말고 직접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OO진흥원이 처리기관이므로 신고내용을 그대로 이송하여 신분 공개
- ▶ 굴삭기 침수사고 손해배상 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은폐 사실을 감사원에 감사요청 하였으나, 담당자가 신고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감사요청서를 피신고기관 감사실에 팩스 송부하여 신고자 신분 노출 → **감사규정 개정**

수사기관  
제공

- ▶ F공무원은 신고자 신분을 익명 처리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나, **경찰이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 제공('14) ⇒ 위반
- ※ I공무원은 건강기능식품 미신고 영업 업체 신고를 경찰에 수사 의뢰 후 **경찰이 연락처를 요구하자 이를 제공**('19) ⇒ 위반 X



## 소송관련 문서제공

- ▶ G기관은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후 피신고자의 변호사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신고자의 정보를 요청하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 제공
- ▶ H기관은 공익신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익신고와 해당 소송이 관련이 없음에도 신고자가 해당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공익신고 사실을 기재한 내부 문건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 기타

- ▶ OO위원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불법증축 신고 내용을 주민 단톡방에 게재하여 신고자의 신분 노출
- ▶ 주민이 아파트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 신고 사실을 경로당 월례회의 및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야기하여 신고자 신분 공개



## 보호 조치

- ▶ 제주 7대경관 선정 전화투표 시 국제전화요금 부과 의혹 신고로 부당 전보, 해임 및 감봉된 신고자 원상회복 요구 → **특별보호조치** 신설
- ▶ 자동차 엔진결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실을 **언론 제보** 후 위원회에 **신고** 하였고, 언론 제보를 사유로 해임된 신고자 보호조치

## 책임 감면

- ▶ 군납 급식류 입찰담합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 감면 처분을 받았으나, 해당 기관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 → 1년 ⇒ **6개월 감경**

## 이행강제금 부과

- ▶ 노인요양시설 직원의 노인학대 사실을 신고한 센터장이 위탁계약 만료를 이유로 임명 해지 되어 위원회가 보호조치 요구를 하였으나, **정해진 기한** 까지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2천만 원** 부과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

구분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요건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재산상 이익이 없어도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지급 절차	신고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 처분액의 4~20%를 지급 (최대 30억)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급	공익신고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신청 (이사비, 소송비, 치료비 등)
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내부·외부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등 (친족, 동거인)

(참고)



## 보 · 포상금, 구조금 지급 사례

공익  
보상금

- ▶ 제조업체들의 제품 공장도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유지 및 제3 업체 시장진입 방해 등 부당 공동행위 신고, 644억여 원 과징금 부과 → 6억 9,224만 원
- ▶ 강의료 등을 빙자하여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회사 신고, 벌금과 추징금 6억 2천여만 원 납부 → 1억 1,200만 원

부패  
보상금

- ▶ 가스절연개폐장치 납품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제출하여 287억여 원 편취 신고 → 11억 688만원
- ▶ 고속국도 확장 공사 시 락볼트 등을 시공하지 않고 설계대로 시공한 것처럼 기성금 청구 신고, 공사에서 34억여 원 환수 → 2억 1,865만 원

포상금  
구조금

- ▶ 가상화폐(K-COIN) 발행하여 다단계 판매 신고, 징역형 → 2,920만 원  
썩은 밀가루로 소맥전분 제조 신고 → 500만 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 병원의 무자격자 의료행위 신고자의 정신적 스트레스 치료비용 및 고발 대응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급 → 302만 원



## IV. 공익신고자 보호법 주요 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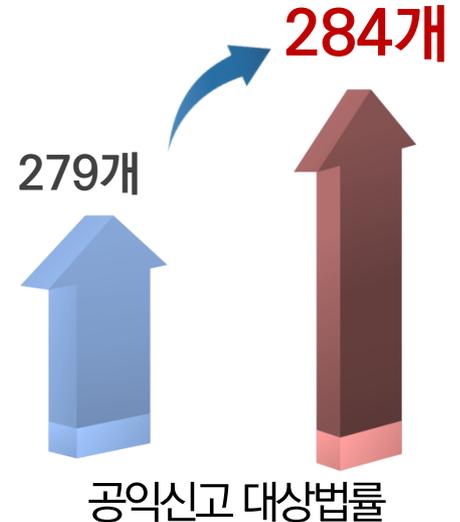
## 공익신고 대상분야 및 법률 확대 [’18.5.1. 시행]

### ➤ 대상분야 확대 (법 제2조)

\* 기존 5대 분야에 더하여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 신규 추가

### ➤ 신고대상 법률 추가 (별표)

\*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추가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8.5.1. 시행]

###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법 제17조)

\*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법 제20조)

\* 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 권익위가 2년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점검

###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법 제 23조)

\*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조치와 관련) 보호조치 결정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불이익 조치를 한 자가 입증책임 부담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8.5.1. 시행]

### ➤ 긴급 구조금 제도(법 제27조)

\* 긴급한 피해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구조금 우선 지급 가능

###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법 제29조의2)

\*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까지 배상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8.5.1. 시행]

### ▶ 벌칙 강화(법 제 23조)

위 반 행 위	기 존	개 정 안
신고자 신분공개, 조사종료 전 피신고내용 공개	3년 / 3천만원	5년 / 5천만원
신고자 파면·해임,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2년 / 2천만원	3년 / 3천만원
신고자 징계 등, 신고 방해 및 취소강요	1년 / 1천만원	2년 / 2천만원

### ▶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시행령 제22조)

\*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 지원 강화 [’18.10.18. 시행]

## ➤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법 제8조의2)

-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 하도록 할 수 있음 → 신고자의 신분 비밀보장 강화

## ➤ 이행강제금 상한금액 상향 조정(법 제21조의2)

내용	기존	개정안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2천만원	3천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기간	2년 이내	이행 시까지

같이 만들어가는 더 좋은 세상  
**공익신고!**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를 약속합니다.

**감사합니다.**